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0.10.14.

제안자 : 김동환 의원외 6인

수정이유

- 안 제5조에 검수범위를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검수단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수정주요내용

- 안 제5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안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중 시장 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중 시장 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